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339)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요건 범정화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 금액 상향 조정(박희승의원안)	3

I. 개요

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33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1. 8.
- (3) 회 부 일 : 2025. 1.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소득공제를 두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행정규칙인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포괄적이며 법률이 아닌 행정청 내부의 규칙에 의해 과세가 달라지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현행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등급 또는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인적공제이자 생활상 추가

경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추가공제라는 점에 비추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부적정한 자의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장애 등급·정도에 따라 소득공제의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2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요건 법정화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 상향 조정 (박희승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장애인 추가공제(제51조제1항제2호) ○ 공제대상: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u> - <신 설> - <신 설> - <신 설> ○ 공제금액: 1명당 <u>연 200만원</u>	☐ 추가공제 대상 장애인 범위 상향입법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액 상향조정 ○ 공제대상: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공제금액: 1명당 <u>연 200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 400만원)</u> ○ 시행일: 2026.1.1.

* 박희승의원안 2025. 1. 8. 제출(의안번호 7339)

☐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법안 제출 당시 시행령상 추가공제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한정하여 장애인 추가공제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그 공제 금액을 현행 연 2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¹⁾

□ 현행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²⁾는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개정안 발의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³⁾은 공제대상 장애인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와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규정하고 있었음.

한편, 현행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등급 또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금액이 적용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중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하며, 뇌병변 · 시각 ·

1) 다만, 2025년 2월 28일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행령상 추가 공제의 적용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었음. 법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개정안과 같이 법률이 개정될 경우 시행령을 이와 정합성을 갖추도록 개정하는 방식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20호]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적 · 자폐성 · 정신장애 등의 경우에는 3급 장애인도 포함하고 있음. 2023년 기준 등록장애인 264.1만명 중 중증장애인은 97.9만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37.0%를 차지하고 있음.

□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4)에 따른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인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비용증가 보전을 위하여 거주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임. 장애인 추가공제액은 2002년부터 종전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05년부터는 다시 연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 139.7만명이 장애인 추가공제를 신청하였으며, 장애인 추가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5,0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21년, 2022년, 2023년 근로소득자의 장애인 추가공제 신청 현황]

(단위: 명, 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근로소득자	신청 인원	1,149,666	1,352,744	1,397,595
	공제 금액	25,527	29,907	30,790
종합소득자*	신청 인원	433,619	517,014	636,434
	공제 금액	9,445	11,258	14,020

자료: 국세청

4)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연도별 장애인 추가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 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전망)	2025년(전망)
3,522	3,738	4,263	4,732	5,096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시행령상 열거된 공제대상 중 장애인·장애아동·상이자 등에 대하여는 내용수정 없이 그대로 상향입법하고, 중증환자의 경우에만 “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범위를 한정하여 상향입법 하려는 것임.
- 우선,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상향입법하는 것은 공제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고, 공제대상의 조정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조세지출 범위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강화되어 조세법률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현행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그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한다는 입법취지가 있음.⁵⁾
- 다만, 현행 법률 규정만으로도 어느 정도 공제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있고, 행정부가 조세정책방향 및 세수여건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제대상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애인의 범위가 자주 변경되거나⁶⁾ 신축적으로 조정

5) 다만 상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행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에 열거된 질환이 있는 자들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따를 경우 그 모호성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음.

될 필요성이 높지 않아 법률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개정안 중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증환자”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등을 둬으로써 응능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적공제의 취지⁷⁾를 감안할 때, 장애인에 못지않은 부양비용이 소요되는 중증환자도 추가공제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취학·취업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고 해당 중증환자를 부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장애인 수준으로 높다면, 비록 장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중증환자에게 장애인에 준하는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조세형평에 부합할 수 있음.

둘째, 중증환자의 경우 현행 법률 규정만으로는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중증환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증환자에 대하여 장애인 추가공제를 명확히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비추어, 중증환자가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⁸⁾

6) 2000년대에 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이 개정되어 장애인의 범위가 변경된 것은 2001년(청각장애자 및 시각장애자 삭제)과 2018년(장애아동 포함), 2025년 단 3회뿐임.

7) 임승준, “조세법”, 2018. 2. p. 477.

8)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의료비 지출대상으로 “장애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셋째, 개정안은 중증환자에 대한 공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에 따르는 납세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개정안은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이란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행정부의 해석상 재량을 좁혀 공제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이 있음. 또한, 법률상 공제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입법권자의 의도와 달리 시행령은 공제대상의 범위를 장애인이 아닌 “중증환자”까지 포함하여 과도하게 확대한 비판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공제대상을 ‘사람’으로서 한정하고 명시적으로 장애인에 준하는 “중증환자”로 그 범위를 일정 부분 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문구 자체도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당초 입법 의도와 달리 여전히 장애인에 준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대하여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마목9)에서도 의료비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의료비 지급대상으로 “중증질환자¹⁰⁾·희귀

9)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중증질환자 등에 대하여 “장애인에 준한다”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음.

□ 끝으로,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을 적용하는 현행 장애인 추가공제액을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외의 장애인에 대하여는 현행과 동일한 연 200만원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음.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경증장애인에 비하여 연 200만원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등을 둬으로써 응능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적공제의 취지¹¹⁾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둘째,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증장애인에 비하여 고용상태가 열악하고 소득수준도 낮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2023년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2.3%, 고용률은 21.2%로 경증장애인 41.1% 및 39.6%의 절반 내외의 수준이고,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4.9%로 경증장애인 3.6%에 비하여 높아 중증장애인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으로 중증질환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별표3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법령상 그 명의를 정확하지 않은 ‘중증환자’와 달리 ‘장애인에 준하는’ 등의 요건이 불필요한 측면이 있음.

11) 임승순, “조세법”, 2018. 2. p. 477.

고용상태가 경증장애인에 비하여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기준 장애인의 고용지표 현황]

(단위 : %)

구 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체 인구	64.7	63.3	2.1
장애인	35.4	34.0	3.9
경증장애인	41.1	39.6	3.6
중증장애인	22.3	21.2	4.9

주: 경제활동참가율은 총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고용률은 총인구 대비 취업자수의 비율을,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수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장애인통계, 2017. 11. p. 65. p. 67.

□ 다만, 현재 「장애인연금법」¹²⁾에 따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¹³⁾에 대하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34만 2,510원부터 43만 2,510원(2025년 기준)의 장애인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2026년에는 2,330억원 2026~2030년 5년간 연평균 2,308억원의 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58

12)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1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38만 원, 부부 220만8,000원) 이하여야 함.